

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

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대상자

대상자			세대주 성명	발급기간	공고사유
성명	생년월일	주소			
이**	2002.03.11	서울시 중구 다산로44길 53 ****	박**	2019.04.01.~2020.03.31.	수취인부재

2. 신청장소: 신당제5동주민센터

3. 발급안내

-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 (사진포함)
 - 증명서가 없는 경우, 주민등록지 관할 이·통장의 확인을 받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, 직계혈족 또는 형제, 자매가 동행(신분증 지참)하여 확인 가능

-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 1매.(3cm×4cm 또는 3.5cm×4.5cm)

- 본인이 직접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, 제출한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※ 위 기간 내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

담당자: 차흥주 (☎02-3396-6838)

2019.03.13.

신당제5동장

